# 2022년도 제11회 변호사시험 응시생 생활관 이용 안내

경북대학교 생활관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

본 생활관은 경북대학교 재학생과 함께 이용하는 공간입니다. 서로에게 편안하고 안락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하시는 동안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**오시는 곳** 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80 경북대학교 생활관 첨성관(문의: 053-950-4045)

#### [입주 절차]

- 입주 등록일시: **2022. 1. 6.(목) 10:00~18:00(입주 등록시간 엄수)**
- 입주창구: **운영사 사무실(위치: 첨성관 1동 2층)**
- 카드키 수령: 관리실에서 신원 확인**(수험표, 신분증 지참)** 후 수령

# 입·퇴관 절차

#### [퇴관 절차]

- 퇴관일시: 2022. 1. 16.(일) 09:00~11:00까지(퇴관 시간 엄수)
- 관실정리: 퇴관 시 개인 짐 모두 반출
  - (퇴관 시 파손 등이 있으면 신고 및 변상 후 퇴관하여야 함)
- 카드키 반납: 청소 후에 출입 카드키를 반드시 관리실로 반납 후 퇴관

### [건물 및 관실은 배부된 카드키를 이용하여 출입]

※ 카드키를 분실했을 경우 관리실(053-941-0994, 1동 2층)로 즉시 신고 요망

#### [발열 측정]

○ 건물 출입구 화상 카메라 앞에서 반드시 마스크 착용 후 발열 측정



# 생활관 출입방법

#### [건물 출입]

○ 화상카메라 발열 측정 후 건물 출입구에 부착된 검정색 카드리더기 중앙에 카드키 세서 부분을 인식





#### [관실 출입]

- 카드키를 관실 출입문 손잡이 삽입구에 화살표 방향으로 '딸깍'소리가 날 때까지 삽입
- 카드키 삽입 후 좌우로 돌리면 잠기고 열림(좌: 잠김, 우: 열림)



### [전기 사용]

○ 관실 입구에 부착된 키박스에 카드키를 화살표 방향으로 **'딸깍'** 소리가 날 때 까지 삽입(퇴실 시 반드시 카드키 분리 요망)



# [인터넷 사용] 사용자 등록 후 사용 가능

○ 사용자 등록 방법

# 인터넷 사용

경북대학교 생활관 홈페이지 접속(dorm.knu.ac.kr)▶등록▶신청하기▶ID, PW 입력▶사용자 정보 입력
▶신청하기▶PC 또는 공유기 재부팅(전원 종료 후 재인가)

- ID, PW : 방 번호 + 1(ID와 PW가 동일) ※ 예시) 2210호 → 22101
- 신청화면이 보이지 않을 경우 "자동으로 IP 주소받기"로 변경 체크
- 경북대학교 생활관 공지사항 재정 "인터넷 사용자등록 관련" 참조
- 경북대학교 생활관 공지사항 재정 "IP 공유기 사용절차" 참조

#### [식당]

- 운영시간: (중식) 11:30~14:00, (석식) 17:30~19:00 ※ 식권 가격: 4200원/1장
- 식당위치: 지하 1층

#### [세탁실]

- 이용료: (세탁) 1,000원, (건조) 1,000원 (세탁카드) 1,000원
  - 별도 세탁카드 구매 후 이용 가능
- ※ 세탁카드 구매: 2동 2층 출입구, 3동 1층 출입구 「카드 판매 충전기」이용)

# 편의시설 이용

금지

사항

- 세탁실 위치(**이성간 출입 엄금**)
- 남: 2413호(2동 4층), 2513호(2동 5층), 3301호(3동 3층), **여**: 2613호(2동 6층), 3823호(3동 8층)
- ※ 지폐교환기: 1동 2층 관리실 앞

#### [편의점]

- 위치: 지하 식당 출구 앞
- 운영시간: 24시간 운영

[출력, 복사, 스캔] ※ 복사기 2대 설치, 사용 혼잡에 유의

- 위치: 지하 식당 입구 맞은편
- 운영시간: 상시운영

#### ○ 층간 남녀 구분에 따른 이성 층 출입금지

- 남: 각 동 1~5층 가능, 여: 각 동 출입층, 6~8층 가능
- 전열기(전기장판, 커피포트, 가습기 등), 위험물 **반입 금지**
- **외부인**을 건물 내부로 입실시키는 행위
- 관실 내 **음주**행위
- 생활관내 **흡연**(흡연은 건물 외부 흡연구역 이용)
- ※ 흡연구역: 1동 2층 출입구, 2동 1층 출입구, 2동 2층 출입구2-3동 사이 휴게 벤치

### ○ <u>소음/소란행위(※ 특히 자정 이후 수면시간)</u> 고성방가, 타인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

○ 무단 퇴관자

경고 조치 경고 누적 시 강제 퇴관

즉시 강제퇴관

추후 이용불가 미반납물품 손해배상 청구

| 유의<br>사항 | <ul> <li>생활관 거주 동안 관생수칙을 확인하여 시설 이용에 주의 바람([붙임] 참조)</li> <li>생활관 입주 시 코로나19 PCR 검사 결과, 건강상태문진표, 입주확인서 제출 필수</li> <li>생활관 이용자는 코로나19 방역수칙(마스크 착용, 손소독, 거리두기 등)을 준수해야 함</li> <li>매일 1회 체온 체크 후 출입구(추후 안내)에 비치된 체온체크지에 기록해야 함</li> <li>생활관 이용 중 방역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경우 반드시 행정실로 연락</li> <li>차량 주차 안내</li> <li>첨성관 지하주차장, 정보전산원 뒤편 주차장, 어학교육원 뒤편 주차장 이용</li> <li>자가용 전면 유리에 휴대전화 번호 부착</li> <li>개인 소지품 관리 철저(본인 책임)</li> <li>침구류(베개, 이불, 시트커버 등) 지참(침대 사이즈: 싱글)</li> <li>개인용품(세면도구, 수건, 빨래 건조대 등 개인 필요 물품) 지참</li> <li>※ 수건 및 비누 등은 편의점(참성관 지하 식당 출구 앞)에서 구매 가능</li> </ul> |
|----------|---|
| 문의처      | ○ 주간(평일): 053-950-4045(첨성관 행정실), 053-950-5452(법전원 행정실)<br>○ 야간: 053-941-0994(관리실)   |

# ◉ 찾아오시는 길

- 시험장: 제4합동강의동 (건물번호 304)

- 생활관: 첨성관 (건물번호 114)



# ● **경북대학교 주소**: 우)41566 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 80 경북대학교

| ○ 대구공항       | - 버스노선: 719, 동구2 (20분 소요)<br>- 택 시: 15분 소요           |
|--------------|--|
| ○ 동대구역       | - 버스노선: 937 (15분 소요)<br>- 택 시: 10분 소요                |
| ○ 대구역        | - 버스노선: 북구2, 503, 410, 706 (25분 소요)<br>- 택 시: 15분 소요 |
| ○ 동대구고속버스터미널 | - 버스노선: 937  |

# 경북대학교 생활관 생활수칙

#### 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수칙은 경북대학교 생활관 규정(이하 "규정"이라 한다) 제7조에 의하여 관내 효율적인 생활교육 및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명칭) 이 수칙은 경북대학교 생활관 생활 수칙(이하 "수칙"이라 한다)이라 명한다.

#### 제2장 관생자치회

제3조(설치) 규정 제6조에 의하여 관생자치회를 둘 수 있다.<개정 2020. 4. 14.>

- 제4조(구성 및 임무) ① 관생자치회는 회장 1명, 부회장 1명, 동대표 각 1명, 부장 약간명과 각 동의 층장으로 구성하며, 대학원동은 동대표 및 외국인 대표 약간명으로 구성할 수 있다.
  - ② 관생자치회의 임원은 관생 경력이 1학기 이상인 자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 성적이 우수한 관생 중에서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되고 임기는 1년으로 한다.
  - ③ 회장이 사고로 인하여 임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, 잔여 임기가 한 학기 이상일 때는 보궐선거를 실시하고 한 학기 미만일 때는 부회장이 회장의 임무를 대행한다.
  - ④ 관생자치회는 자주적이고, 민주적인 자치활동을 통하여 관생들의 후생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관내 질서 유지, 환경 정화 등 공동생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협력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〈개정 2020. 4. 14.〉
  - ⑤ 관생자치회의 운영은 관생자치회칙에 의하며, 관생자치회칙이 변경될 경우 생활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<개정 2015. 6. 16.>
  - ⑥ 대구캠퍼스와 상주캠퍼스의 관생자치회는 별도로 구성된다.

#### 제3장 입주와 퇴관

- **제5조(입주)** ① 해당 입주서류를 구비하여 입주 등록을 완료한 자는 배정된 관실에 입실한다.<개정 2015. 6. 16.>
  -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입주기한까지 입주하지 않는 자는 입주 포기 의사를 통보한 날을 기준으로 입주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제16조 및 제17조에 의거 환불한다.
- 제6조(관실 배정) 관실은 관장이 배정하며, 일단 배정된 관실은 관생들 간에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.
- 제7조(퇴관) ① 퇴관을 원하는 관생은 퇴관 3일전까지 통합정보시스템(yes.knu.ac.kr)의 퇴관 신청란에 기재하여야 한다.
  - ② 퇴관할 때는 관장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생활관에서 지급 받은 비품을 직원에게 인계한 후 퇴관 여부를 확인 받은 다음 퇴관한다.

#### 제4장 출입증 관리 및 관내생활

- 제8조(손혈관 등록 및 출입증 발급) ① 입주 시 손혈관을 등록하여 관내출입과 식당 이용 시 사용하여야 한다. (단, 첨성관, 명의관은 관내 출입 시 출입증을 사용)
  (자정 2020. 4. 14.)
  - ② 첨성관, 명의관, 누리관생은 출입증을 발급 받아 관내 출입 시 항상 휴대 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 할 수 없다.
  - ③ 〈삭제 2020. 4. 14.〉
  - ④ 출입증을 분실하였을 때는 관리실(첨성관, 명의관, 누리관)에 신고하여 재발급을 받아야 하며 재발급(분

- 실 훼손)시 재발급에 필요한 일정 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.<개정 2020. 4. 14.>
- 제9조(관생 준수 사항) 관생은 관내의 공중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  - 1. 정숙
  - 2. 관실 안의 청결 상태 유지
  - 3. 단정한 몸 가짐
  - 4. 시간 엄수와 질서유지
  - 5. 허가하지 않은 전자(가전)제품 사용금지<개정 2015. 6. 16., 2018. 4. 9.>
  - 6. 도박, 음주, 폭행 및 절도 금지
  - 7. 위험물의 관내 반입 금지
  - 8. 시설물과 비품의 파괴, 손상, 변형 및 임의 이동 금지
  - 9. 관내 지정된 장소 이외 취사행위 금지<개정 2021. 1 .20.>
  - 10. 낙서, 문서의 무단 전시, 무단 배포 및 무단 방송 금지
  - 11. 타인명의 우편물의 수취 또는 개봉 금지
  - 12. 관내 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 금지
  - 13. 건물 내 금연<개정 2015. 6. 16.>
  - 14. 쓰레기 유기와 환경 오염 행위 금지
  - 15. 단체 생활에 불쾌감을 주는 행위 금지
  - 16. 퇴관 시 관실청소와 정리 정돈 엄수
  - 17. 관내 애완동물 사육 금지
  - 18. 출임금지된 구역에 임의 출입하는 행위 금지<신설 2015. 6. 16.>
  - 19. 관내 외부인 임의동반 행위 금지<신설 2015. 6. 16.>
  - 20. 생활관장 및 지도교수의 위임을 받은 생활조교 지시사항 준수<신설 2015. 6. 16.>
- 제10조(인원과 관실 점검) ① 인원과 관실 점검은 생활관장 또는 지도교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할 수 있다. 단, 응급조치가 요구되는 비상상황, 화재, 도난사고 등의 경우에는 관생이 재실하지 않아도 관실을 점검할 수 있으며 사후 점검 사실을 통지한다.<개정 2015. 6. 16., 2018. 4. 9.>
  - ② 생활조교는 생활관장 및 지도교수의 지시 또는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라 관실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. 단, 생활조교의 일상 업무는 예외로 한다.<신설 2015. 6. 16.×개정 2018.4.9.>
  - ③ 점검 시 사용금지 물품은 반출을 지시할 수 있으며, 지시 불이행 시 물건을 압수할 수 있다.(압수물품은 퇴관 시 반환한다.)<br/>
    (신설 2015. 6. 16.)<br/>
    \*개정 2021. 1 .20.>
- 제11조(식사) ① 식사는 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(다만, 환자는 예외로 한다).
  - ② 식사할 때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식사 예절을 지켜야 한다.
- 제12조(일과표) ① 관내 각 건물의 출입시간은 특별히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05:00부터 다음날 01:00 까지 함을 원칙으로 한다.
  - ② 식사시간은 아래와 같으며 특별한 경우 변경할 수 있다.
  - 1. 조식: 07:00 ~ 09:00
  - 2. 중식: 11:30 ~ 14:00
  - 3. 석식: 17:30 ~ 19:00
- 제13조(시설물의 이용 제한) 관실 내 전력은 조명등을 제외하고는 01:00부터 05:00까지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. 다만 각 동의 독서실과 컴퓨터실은 24시간 계속 이용할 수 있다.

#### 제5장 납 부 금

제14조(납부금) 생활관비 납부금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장이 정한다.

제15조(생활관비) 입주생은 다음 각 호의 생활관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
- 1. 관리비(매학기 연 2회 및 방학기간)를 일수로 책정하여 정한다.
- 2. 식비(매학기 연 2회 및 방학기간)를 식수로 책정하여 정한다.<개정 2021. 1 .20.>
- 제16조(관리비 계산) ① 학기 중도 입·퇴관자의 관리비는 입·퇴관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, 개관일수 3/4이후부터는 환불하지 아니한다.[단, 공적인 사유가 인정될 경우(증빙자료 제출)만 환불한다]
  정 2014. 6. 18., 2019. 1. 31.>
- ② 단, 방학기간 중도 입ㆍ퇴관자의 관리비는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징수하거나 환불한다

| 입주           | 할 때        | 퇴관할 때        |           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개관일부터        |            | 개관일부터        |            |
| · 1/2까지      | 전액징수       | · 1/2까지      | 전액의 1/2 환불 |
| ・ 1/2이후~방학종료 | 전액의 1/2 징수 | · 1/2이후~방학종료 | 환불없음       |

- 제17조(식비 계산) ① 중도 입주자의 식비는 입주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징수하고, 중도 퇴관자의 식비는 퇴관일을 기준으로 남은식수를 총선택식수에서 일할 계산하여 환불하되, 학기 종료 15일 전부터는 환불하지 않는다. [단, 공적인 사유가 인정될 경우(증빙자료 제출)만 환불한다]
  - ② 결식비는 환불하지 않는다. 단, 1일 3식을 선택한 학생이 공적인 사유로 5일 이상 결식할 경우 결식일 3일 전에 결식비 신청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할 때는 예외로 한다.
  - ③ 도식을 하다가 적발될 경우 1개월치 식비(매식기준)를 벌금으로 부과한다.
  - ④ 방학 중 연수 등을 목적으로 단기 이용 시 식비는 매식기준으로 징수하며, 환불은 하지 않는다.
  - ⑤ 매식으로 구매한 식권은 환불하지 않는다.(해당년도 회계종료일까지만 사용가능하며 다음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)</br>
- 제18조(시설물 변상) 시설물 손망실에 대하여는 퇴관 후 점검 결과에 따라 원상회복액을 변상하여야 한다.

#### 제6장 면회, 외박 및 우편물

- 제19조 (생활관 출입 제한과 면회) ①관생은 소속 생활관 이외의 다른 생활관을 무단으로 출입하여서는 아니된다.
  - ② 면회자는 안내실 또는 생활조교실에 면회를 신청하여야 하며 생활조교의 승인 후 출입할 수 있다.<개정 2015. 6. 16.>
  - ③ 면회라 함은 가족, 친지, 기타 지인들의 방문을 모두 포함한다.<신설 2015. 6. 16.>
  - ④ 면회시간은 09:00~20:00까지로 한다.<개정 2015. 6. 16.>
- 제20조(외출) 외출 중 연락이 필요한 관생은 생활조교에게 연락처를 남겨야 한다.<개정 2020. 4. 14.>
- 제21조(우편물) 일반 우편물은 각 관에 비치된 우편함에서 수령하며, 택배는 지정된 택배실에서 수령한다.<개정 2015. 6. 16.>

#### 제7장 관리, 상담, 공고 및 행사

- 제22조(관리) ① 전기, 수도, 난방 시설 등의 시설물이나 기계, 기구, 비품 등 물품의 파손 또는 고장이 있을 때에는 통합정보시스템(yes.knu.ac.kr) 시설물 고장 신고란에 기재한다.(누리관은 한국교육개발원 모니터링시스템 서비스 신청란에 기재한다.)
  - ② 공용물을 파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에는 개인 변상을 원칙으로 한다.
- **제23조(보고와 상담)** ① 관생은 관장, 지도교수, 생활조교 및 관련 직원으로부터 지시 받은 사항에 대하여 반드 시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.

- ② 관생은 직원, 생활조교, 지도교수 및 관장을 방문하여 상담할 수 있다.
- ③ 관생의 의견이나 건의사항은 관생자치회장이나 임원을 통하여 건의함을 원칙으로 한다(서면 건의자는 반 드시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).

제24조(공고와 방송) 관생은 관장이 공고하거나 방송한 내용을 숙지하여야 한다.

제25조(행사와 집회) 관내의 모든 행사와 집회는 5일 전에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#### 제8장 상벌과 벌점 기준

- 제26조(상벌) ① 관장은 관생 중 품행이 방정하고 성실하며 생활에 모범이 되었다고 인정되는 관생에 대하여 지도교수회의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와 같이 상점을 부여할 수 있고, 상점이 10점 이상일 경우 규정 제19조 제2항의 우선 선발 대상자에 포함할 수 있다.
  - 1. 독서실, 휴게실 및 식당 등 공공시설물에서의 노력 봉사 : 3점 이하
  - 2. 응급구조, 간병 등 봉사 : 3점 이하
  - 3. 건물 안팎과 관실 환경미화 솔선 수범 : 3점 이하
  - 4. 생활관 명예선양, 공동생활의 모범 등 기타 선행 : 3점 이하
  - 5. 관생자치회가 주관하는 공식적인 행사의 자원봉사 : 3점 이하
  - ② 관생자치회원은 상점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.<개정 2015. 6. 16.>
  - ③ 관장은 관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벌점을 부과(제2호의 경우에는 지도교수회의를 거쳐야 한다.)할 수 있다. 다만, 개전의 정이 뚜렷하여 관생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의 노력 봉사를 행하게 하여 벌점을 경감할 수 있다.
  - 1. 별표(벌점기준표)에 의한 행위
  - 2. 상기 제1호 외의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행위(외부생도 벌점을 줄 수 있다.)
  - ④ 관장은 벌점의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분할 수 있다.<개정 2015. 6. 16., 2017.2.23.>

| 벌 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처 분 사 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|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|--|--|
| 1 ~ 6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벌점적용기간이 지나면 자동삭제(5점이상 경고할 수 있다)           |  |  |  |
| 7 ~ 9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다음학년도 입주제한, 다음학년도 이후 자동삭제                 |  |  |  |
| 10점 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다음학년도부터 입주대상에서 제외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|  |
| 14점 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학기 중이라도 즉시 퇴관처리 할 수 있으며 다음학년도부터 입주대상에서 제외 |  |  |  |
| ※ 벌점적용기간: 당해년도 1월 1일 ~ 당해년도 12월 31일까지 |   |  |  |  |

- ⑤ 벌점은 개인이 수시로 시스템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.<개정 2017.2.23.>
- ⑥ 관장은 필요 시 관생 상벌위원회를 구성하여 관생들의 상·벌점의 적정성 및 퇴관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.<신설 2015. 6. 16.>
- ⑦ 벌점 누적에 따른 처분은 개인의 학적변동과 관계없이 계속적으로 적용된다.<신설 2020. 4. 14.>

| 내 용   | 벌점     |
|---|--------|
| 1. 절도, 폭행, 관내의 기물 또는 시설물을 파손하는 행위   | 퇴관(14) |
| 2. 관내 생활과 무관한 단체 활동 행위  | 퇴관(14) |
| 3. 관내에서 화재를 일으킨 행위  | 퇴관(14) |
| 4. 관내에 휘발유, 부탄가스 등 화재 위험이 있는 인화물질 및 불법소지물질(마약 등 향정신 성물질, 청산가리, 대마초 등) 반입 행위 | 퇴관(14) |
| 5. 배정된 관실을 타인에게 양도한 행위 또는 양도받은 행위   | 퇴관(14) |
| 6. 허가되지 않은 전자기기 또는 화재위험이 있는 물품을 반입하거나 사용하는 행위(전기장 판, 전기난로, 가스버너, 전열기 등)     | 14~7   |
| 7. 관내(식당포함) 출입할 때 지정된 출입구를 이용하지 않는 행위 또는 방조행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0     |
| 8. 출입증을 대여 또는 양도하거나 외부인의 생활관 출입을 방조한 행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0     |
| 9. 배정된 관실을 임의로 변경한 행위   | 10     |
| 10. 타인 명의의 우편물을 불법 수취하거나 개봉한 행위   | 10     |
| 11. 관실 내 애완동물 사육 행위   | 10     |
| 12. 외부인을 관내에 숙박시킨 행위 또는 21:00 이후 외부인을 잔류시킨 행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5      |
| 13. 고의로 출입문을 열어 놓거나 파손하는 행위   | 5      |
| 14. 해킹 등 인터넷 사용상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  | 5      |
| 15. 관내에서 음주, 도박을 한 행위(관내에서 주류를 소유하고 있어도 음주로 간주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5      |
| 16. 운동기구, 세면기구 등 공공기물을 관실 내 반입하는 행위   | 5      |
| 17. 인터넷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피해를 입힌 행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5      |
| 18. 음식점 수거용 그릇이 배출 되는 음식물을 관내에 반입하는 행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5      |
| 19. 관실 내에서 흡연하는 행위[관실 외 기타 금연구역(옥상포함)에서 흡연하는 행위]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5      |
| 20. 만취상태에서 생활관에 들어오는 행위   | 10     |
| 21. 이성을 관내로 대동한 경우  | 10     |
| 22. 도식행위를 하거나 타인의 도식을 방조하거나 유도한 행위  | 5      |
| 23. 관실 청소와 정리 정돈 불이행(퇴관시포함, 차등부과)   | 5~1    |
| 24. 소란 또는 소음을 일으키는 행위(차등부과)   | 5~1    |
| 25. 외부인을 임의 입실시킨 행위   | 5      |
| 26. OT에 불참하는 행위   | 2      |
| 27. 부재 시 관실 내 소등을 하지 않거나, PC를 끄지 아니한 행위, 냉난방기기를 켜둔채 나가는 행위                  | 2      |
| 28. 수돗물 사용 후 물을 잠그지 아니한 행위  | 2      |
| 29. 식당 출구를 통하여 들어가는 행위  | 2      |
| 30. 휴게실 내에 음식물 반입 행위  | 2      |
| 31.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주차하거나 타인이 피해를 받도록 주차한 행위                         | 2      |
| 32. 관내에 침이나 가래를 뱉는 행위   | 2      |
| 33. 담배꽁초 등을 생활관 주변에 함부로 버리는 행위  | 2      |
| 34. 분리수거를 제대로 하지 않는 행위  | 2      |
| 35. 귀관 시간이후 출입 행위(01:00~05:00) (학부만 해당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      |
| 36. 입주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를 정해진 기일까지 내지 않은 행위(이후 늦어질시 추가벌점)                         | 1      |
| 37. 면회 규정을 지키지 않은 행위  | 5      |
| 38. 관리자(관장, 지도교수, 생활조교 포함) 지시사항 불이행   | 7~1    |